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07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"1년 이내에"를 "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"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	제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	③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	
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	
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	2
획의 승인을 받은 후 <u>1년 이내</u>	<u>정당한 사</u>
<u>에</u>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	<u>유 없이 1년 이내에</u>
한 경우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